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[별표 4] <개정 2024. 9. 20.>

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(제7조제2항 관련)

배열 / 신호등	가로형 신호등	세로형 신호등
적색·황색·녹색화살표·녹색의 사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	• 좌로부터 적색·황색·녹색화살표·녹색의 순서로 한다. • 좌로부터 적색·황색·녹색의 순서로 하고, 적색등화 아래에 녹색화살표 등화를 배열한다.	위로부터 적색·황색·녹색화살표·녹색의 순서로 한다.
적색·황색 및 녹색(녹색화살표)의 삼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	좌로부터 적색·황색·녹색(녹색화살표)의 순서로 한다.	위로부터 적색·황색·녹색(녹색화살표)의 순서로 한다.
적색화살표·황색화살표 및 녹색화살표의 삼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	좌로부터 적색화살표·황색화살표·녹색화살표의 순서로 한다.	위로부터 적색화살표·황색화살표·녹색화살표의 순서로 한다.
적색X표 및 녹색하향화살표의 이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	좌로부터 적색X표·녹색하향화살표의 순서로 한다.	
적색 및 녹색의 이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		위로부터 적색·녹색의 순서로 한다.
황색T자형·백색가로막대형·백색점형·백색세로막대형·백색사선막대형의 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		위로부터 황색T자형·백색가로막대형·백색점형·백색세로막대형의 순서로 배열하고, 백색사선막대형은 백색세로막대형의 좌우측에 배열한다. 다만, 도로폭이 협소한 등 부득이한

		경우에는 백색사선막대형을 백색세로막대형의 좌우측이 아닌 아래에 배열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로부터 백색사선막대형(좌측)·백색사선막대형(우측) 순으로 배열한다.